

사고 이력을 숨긴 중고자동차의 매매계약 취소는?

글_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법학박사)

자동차 등록대수가 2,100만대에 육박하고 차량의 교환주기가 짧아지면서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외형적 성장과는 달리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각종 소비자불만 및 피해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차 성능 및 상태기록부의 주요 장치 항목과 자기진단사항이 양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다른 성능불량을 들 수 있다. 최근 중대한 사고로 고액의 수리비가 들어간 자동차를 딜러가 매도하면서 사고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사안에 대해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고 딜러에게 매매대금 반환의무를 인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2015가단242798)을 소개한다.

사건 개요

중대한 사고 및 수리 이력을 숨긴 중고차 매매

중고차 딜러 K는 중고차 거래 인터넷사이트에 한 중고차량 매물을 등록하면서 매매대금 3천 7백여만원, 무사고 차량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소비자 L은 게시물을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차량은 경미한 사고로 웬다 판금 수리를 한 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 받았다. 이후 차량에 관한 4천여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의 등록명의를 이전 받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얼마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겨 성능검사를 의뢰하였는데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해 전손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L은 K를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차량을 매수하게 하였으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매매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판결

기망행위로 매매계약 취소, 딜러의 매매대금 반환할 의무 인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K는 차량이 수리비 4천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L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웬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L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L에게 차량에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L이 K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L의 준비서면이 그 무렵 K에게 송달됨으로써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K는 L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